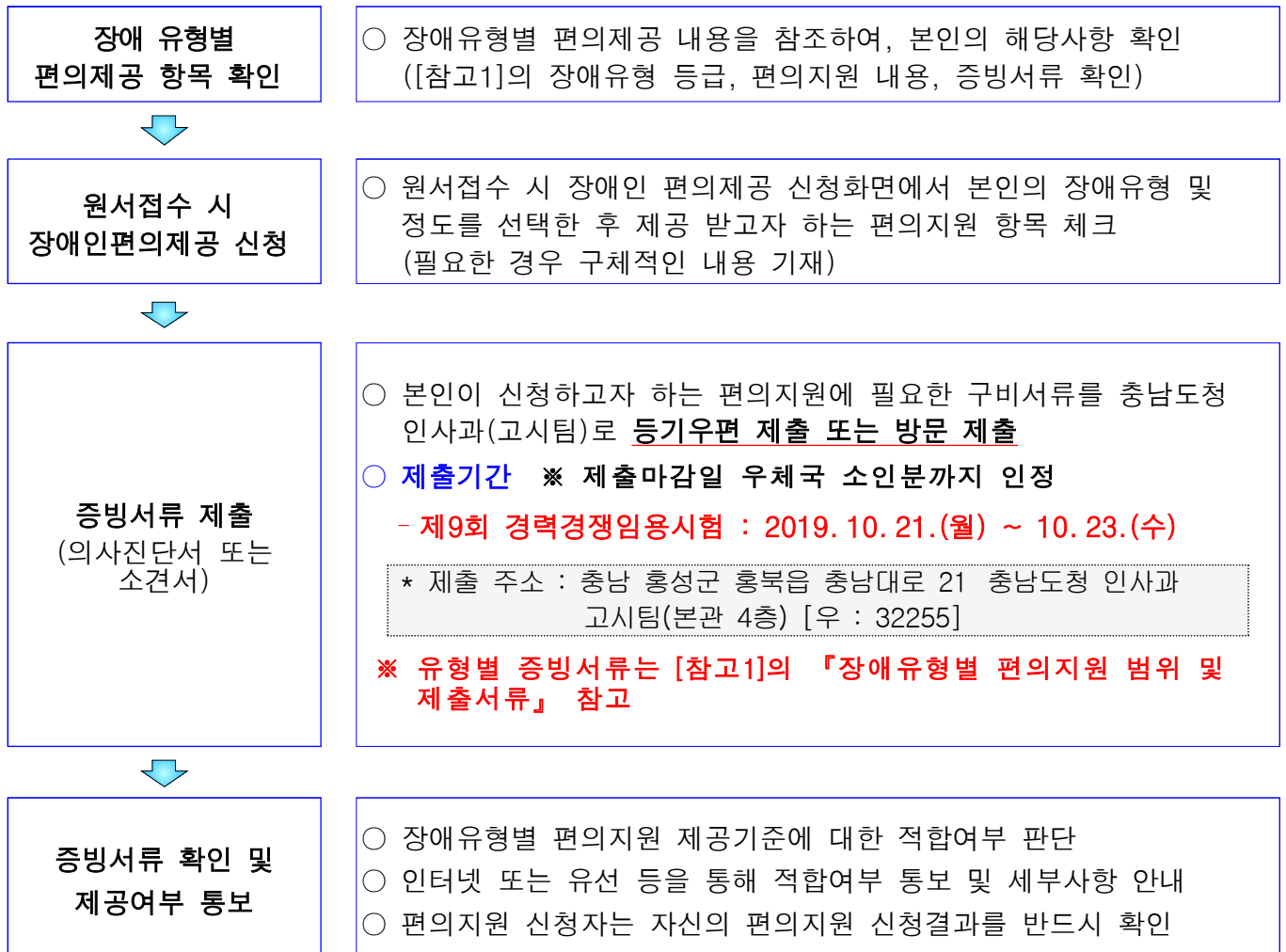


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
 - 시각·지체·청각·뇌병변 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 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3 편이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이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이 제공 대상여부, 증빙서류 및 편이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이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참고2)'를 확인 [의사진단 (소견)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이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내용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이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이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됩니다.([참고2]발급일자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2018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이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5. 시험장 입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팀(041-635-3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9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 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없음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없음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의사 진단서 1부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시각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의사 진단서 1부	기존 1~2급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1부	기존 3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1부	기존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없음	기존 4,5급 1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의사 진단서 1부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없음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 수학, 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가능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구 분	제9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9년 10월 23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7년 10월 23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 신 부		상기인은 임신 6주,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